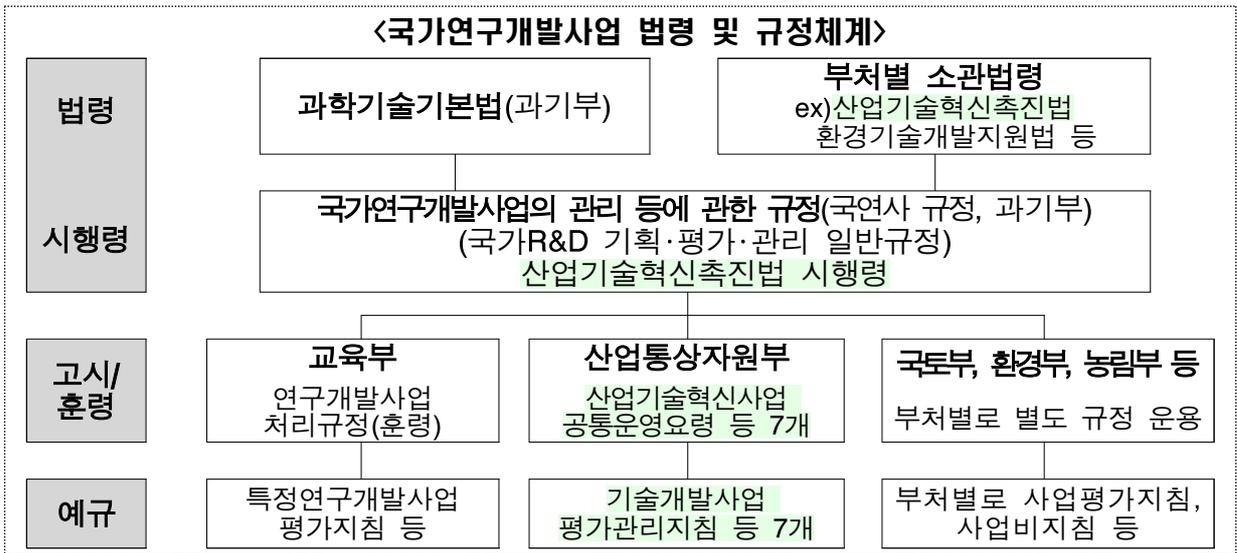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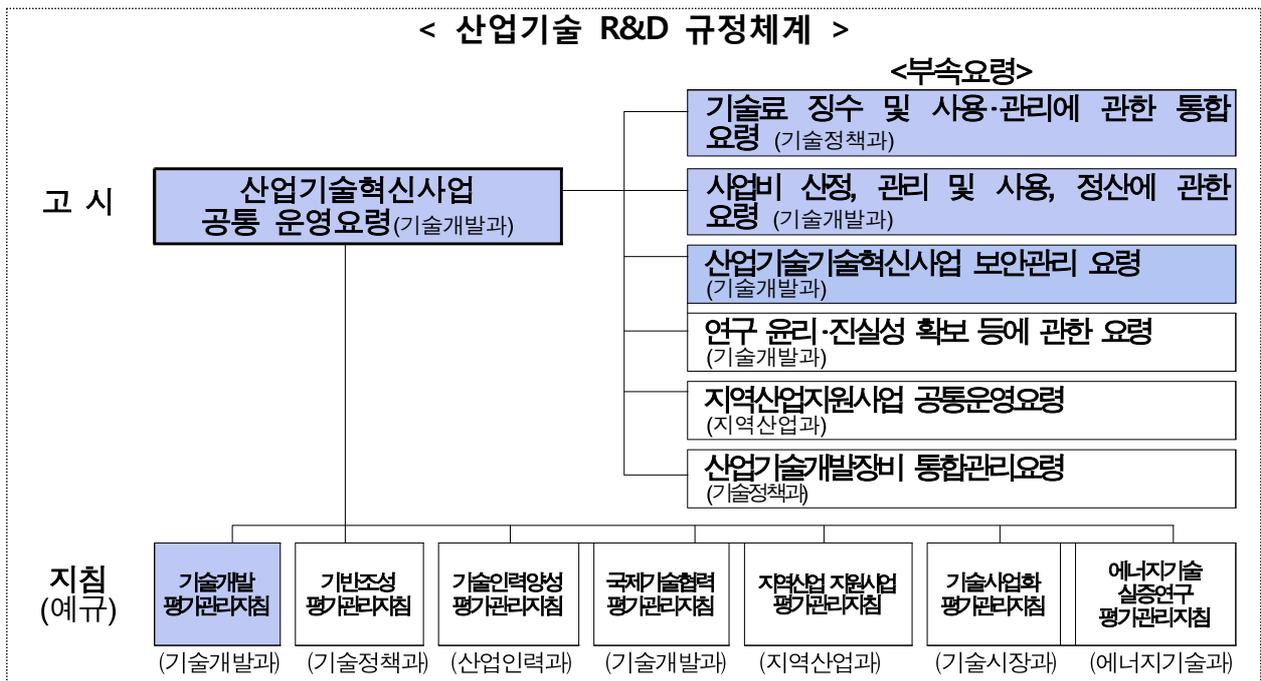
# I . R&D 규정 운용현황 및 주요 개정내용

## 1. R&D 규정 운용현황

- 국가 R&D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대통령령)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



- 산업부 R&D 사업규정은 총 14개로, 요령 7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7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에 5개 규정을 개정



## 2. 주요 개정 내용

### ① 청년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① 청년고용 의무채용(공통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요령 별표2)

-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의무고용

\* 의무채용 시점(1차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5억원 배수 해당연도에 추가 채용), 미이행시 조치(계상비용 현금 반납) 등 포함

#### ② 추가채용시 현금부담 완화(공통운영요령 제25·27조, 사업비요령 별표2)

- 중견·중소기업이 의무채용 외 추가채용시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을 인건비만큼 감면

\* 계속과제 적용 근거, 미이행시 조치(현금부담 미이행으로 간주 → 현금 반납 조치) 등 포함

#### ③ 청년고용 정부납부기술료 감면(기술료 요령 제11조, 12조, 14조)

-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경

\*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의 2년간 급여의 50% 이내 감면, 미이행시 조치(기술료 감면 취소) 등 포함

### ②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후속조치

#### ①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공통운영요령 제37조)

-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R&D 사업화 관련 상세 성과정보\*를 공개 범위에 추가

\* 과제 종료 후 5년간 제출하는 '성과활용 현황 보고서'상의 기술적 성과 (논문, 저작권, 표준), 경제적 성과(매출액, 비용절감, 수입대체효과) 정보

② Buy-R&D 활성화를 위한 현금부담 경감(공통운영요령 제25조)

- 중소·중견 기업이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심의 절차를 거쳐 자체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경감(20%p ↓)
- \* (現)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 (改)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

③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기술개발지침 제36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 별표2)

- 연구자는 물론, 전담기관 담당자 및 평가위원도 목표변경 필요성 검토·제안 등 목표변경 필요성 검토 의무화
-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계속수행 필요가 없어진 과제는 사업비 반납이나 제재 없이 중단 허용
- \* 현재는 정당한 사유(법·제도변화) 및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외의 사유로 연구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미반납시 환수, 참여제한)

④ 경쟁형 과제 활성화(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44조)

- 경쟁형 R&D 참여 과제는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페널티 면제하고, 과제수행 총량제\* 적용 배제
- \* 주관기관 유형별 과제수행 총량 : 중소 3, 중견 5 (정상기업 기준)

⑤ 조기완료과제 인센티브(기술개발평가지침 제37조)

- 최종 목표를 조기달성한 과제는 심의를 거쳐 잔여 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 R&D 투자 허용
- \* 후속 R&D 예시 : TRL 7단계 과제 종료시 8~9단계 연구

⑥ R&D 결과 검증강화(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 사업비요령 별표2)

- 최종평가지 공신력있는 기관(시험인증기관 등)의 시험성적서 첨부
- 공인 시험성적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얻은 결과 제출
- \*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 기술, 신기술 분야 등

⑦ 특허전략 내실화(사업비요령 별표2, 표준공고문)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

\* 기준 금액(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은 사업공고에 포함

⑧ 표준화 활동 강화(기술개발평가지침 제6조, 사업비요령 별표2)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 사업비(1억원 이내)를 의무 계상**토록 하고, **평가위원회에 표준 전문가 참여 의무화**

⑨ 규제개선 체계 구축(공통운영요령 제18조, 기술개발평가지침 제13조)

-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사항의 검토를 병행토록 하고,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 확인**

② **대외 지적사항 반영 (국회, 국조실)**

① 시약·재료비 등 물품구매기준 마련(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2, 국조실)

- 기준금액(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과제 연관성, 규모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실시하고, 누계 500만원 이상 구매물품은 **정산 강화**

\* 연구자의 과도한 부담방지를 위해, 단위 품목 기준 상위 25%(최근 3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② 전략기술 보안과제 지정절차 강화(보안관리요령 제10조, 국제기술협력 사업 평가지침 제9호, 2017 국감)

- 해외기관 참여과제는 과제선정 평가 후 전문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보안과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견조회 실시**

- 해외기관 참여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예외 조항은 삭제

③ 전문위 평가결과 보고시점 명문화(기술개발평가지침 제45조, 2017 국감)

- 문제과제의 환수금 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산업부에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명문화

③ **연구자 중심의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① 인건비 미집행 기준 개선(사업비요령 별표4)

- 신규채용 인건비 미집행시 **기존인력 인건비**는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집행액 초과 금액만 불인정**하도록 개선
  - \* 현행 규정은 신규인건비 미집행시,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과 무관하게 신규인건비 미집행액 만큼 기존 인건비 불인정

② 출산 휴가시 인건비 지급(사업비요령 별표2)

- \* 과기부 IITP 사례 준용

④ **기타**

① 연구발표회 운영방안 개선(공통운영요령 제29조, 기술개발평가지침 제36조)

- 진행 6개월 이내 과제는 연구발표회 대신 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대체하고, **특별평가 대상 포괄\*** 규정
  - \* 현행 ‘연구개발 수행 불량’ 외에 계속수행 필요성이 적은 경우, 목표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필요
- 연차협약과제와 달리 출연금 지급시 검토사항이 불명확한 **단계 및 일괄과제**에 대한 **출연금 지급 중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 의무사항 불이행, 재정적 위험 발생시

② 기타 연차협약에서 일괄협약으로의 변경에 따라 규정상 필요한 문구 조정 등

## Ⅱ.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 1 청년인력 일자리 확대

- (배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3.16일, BH)
  - 동 대책 중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의 R&D 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산업부, 과기부 등 11개 부처 공통으로 마련
    - \* R&D 지원금 4~5억원당 청년 채용의무화, 사업화 단계 기술료를 청년채용시 감면, 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 자금으로 인정
- (경과) 그간 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국조실(규제조정실)과 규제협의 → ‘규제 없음’으로 결정

### 1.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과제 단위\*로 수행기관 중 기업이 5억원 이상 출연금을 받는 경우, 출연금 합계액 5억원 당 청년인력 1명 이상 의무채용(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신설, 사업비요령 별표2 개정)
  - \* 1개 과제에 3개 기업이 10억원을 받는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2명 이상 의무채용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여 제출)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⑩ (생략) ⑩ (생략) < 신 설 >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⑩ (생략) ⑩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총수행기간에 걸쳐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lt;인건비(현금가능)&gt;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후략) <u>&lt; 신 설 &gt;</u></p>	<p>[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lt;인건비(현금가능)&gt;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후략) - <u>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 인원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u></p>

- (채용시점) 1차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출연금 누계가 5억원 배수를 초과하는 연도에 1명 이상 가산(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2항 신설)

\* 예) 정부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출연금	3억	3억	4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⑪ (생략) <u>&lt; 신 설 &gt;</u></p>	<p>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⑪ (생략) <u>⑫총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u></p>

□ (대상사업 등) 의무채용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3항 신설)

\* 장비구축 등 기반구축성 사업, 인력양성사업은 의무화 적용 배제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⑫ (생략) < 신 설 >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⑫ (생략) ⑬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미이행시 조치)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의무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내역은 현금으로 반납(현행규정 준용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③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인건비를 현물로만 계상해야 하는 대기업이 의무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하는 근거 마련(현금 반납, 사업비요령 별표4)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공통사항 가.~차. (생략) < 신 설 >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공통사항 가.~차. (생략) 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상 기본채용 인원을 다른 참여연구원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요령 제1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2. 추가 채용시 현금부담 완화

- (현금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의무채용 외에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인건비만큼 감면(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6항 신설 제27조 제2항 개정, 사업비요령 별표2 개정)

< 공통운영요령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⑤ (생략)  <u>&lt; 신 설 &gt;</u></p>	<p>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⑤ (생략)  <u>⑥중견·중소기업이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 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u></p>
<p>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략)            1. ~ 6. (생략)            7.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u>사업비 총액의 변경</u></p>	<p>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략)            1. ~ 6. (생략)            7.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u>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u></p>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직접비 산정기준</p> <p>&lt;인건비(현금가능)&gt;</p> <p>○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후략)</p> <p><u>&lt; 신 설 &gt;</u></p>	<p>[별표 2] 직접비 산정기준</p> <p>&lt;인건비(현금가능)&gt;</p> <p>○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후략)</p> <p>- <u>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 인원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u></p>

- (계속과제 적용)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한 인력보다 추가 채용시 현금부담 완화 적용 근거 마련(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9항 신설)

< 공통운영요령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⑧ (생략)</p> <p><u>&lt; 신 설 &gt;</u></p>	<p>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⑧ (생략)</p> <p><u>⑨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 액수를 기준으로 제6항 내지 제9항의 예에 준하여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u></p>

- (고용유지) 추가 고용한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차년도 민간부담현금 감액 근거 마련(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9항 신설)

< 공통운영요령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⑧ (생략) <u>&lt; 신 설 &gt;</u>	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⑧ (생략) <u>⑧제6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 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다.</u>

- (미이행시 조치) 추가고용키로 하고 현금부담을 완화하였음에도 미이행시에는 출연금 불인정\* 기준 마련(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7항 신설)

\* 미이행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반납 조치

< 공통운영요령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⑥ (생략) <u>&lt; 신 설 &gt;</u>	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⑥ (생략) <u>⑦제6항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 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u>

### 3. 청년고용 연계 기술료 감면

- (기술료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고용 후 신청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경
  - 청년고용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제도 시행근거 마련(기술료 요령 제11조)
- (고용유지) 기술료 결과 통보일 전 6개월 이내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청년인력을 신규고용하고 2년간 유지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경

\*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후 2년간 해당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 대해 기술료 감경 적용

\*\* 감면 후 기술료 잔액은 확정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납부

□ (미이행시 조치) 청년인력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 ~ ③ (생략) <u>&lt; 신 설 &gt;</u></p>	<p>제11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 ~ ③ (생략)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전 6개월 이내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2년간 납부유예 및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경은 제9조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료를 한도로,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간 해당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술료의 납부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려는 실시기업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준일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p><u>&lt; 개 정 &gt;</u></p>	

□ (경상기술료 감면) 경상기술료 납부선택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준용규정 마련(기술료 요령 제12조, 제14조)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및 징수한도에 대해 납부유예 및 감경  
 (해당인력 2년간 급여의 50% 금액 이내)

○ 경상기술료 매출 관련 보고서는 유예기간 경과 후 일괄제출 가능

\*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 일괄 제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 ~ ③ (생략) <u>&lt; 개정 &gt;</u>	제12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 ~ ③ (생략) <u>④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경상기술료의 착수            기본료와 경상기술료 징수한도의 납부유예 및 감경에            대하여 준용한다.</u>  제14조(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① ~ ③ (생략) <u>②정당한 사유없이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거나 매출액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기            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            술료 납부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고, 유예기간이 경과            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때            까지의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1.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 (혁신방안)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과제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련 추가 상세 성과정보 및 기업정보 공개\*

\* R&D 사업화 매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 등

- (현황) 현재는 최종보고서만 공개\*하도록 규정

\* 산업기술 R&D정보포털(KEIT), 에너지기술정보통합서비스(KETEP)

- (개정내용) R&D 사업 결과의 공개 범위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정보 추가

\* 주관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라 과제 종료된 후 5년간 매년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적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표준) 및 경제적 성과(R&D 사업화매출액, 비용절감, 수입대체효과 등) 등으로 나뉨

## &lt;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gt;

현행	개정(안)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 <u>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u>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2. Buy-R&D 활성화를 위한 현금부담 경감

- (혁신방안) 중견·중소기업의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자체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대폭 완화
  - \* (現)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 (改)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
- (현황)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40 ~ 60% 범위\*에서 현금 부담
  - \*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 (개정내용) 평가위원회에서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R&D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인정된 과제에 현금부담 비율을 완화 적용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25조(민간부담금) ① ~ ⑤ (생략) <u>⑥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u>

### 3.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근거 마련

- (혁신방안) 기술·시장 환경을 반영한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 하고 연구 계속수행 필요가 없는 경우 중도에 중단 허용

\* 연구자는 물론, 전담 관리자(MD, PD, 평가위원 등)도 반드시 검토, 제안

- (현황) 진도점검 과정에서 온라인 사전검토(평가위원)를 시행 중이며, 목표변경 관련 사전 검토 절차는 별도로 없음

- 연구 중단은 **정당한 사유**(법·제도 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허용\*

\* 정당·불가항력 사유외 연구중단시 사업비 반납 (미반납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실시)

- (개정내용) 진도 점검시 목표변경 필요성 여부를 연구자 외에 전담 기관 담당자 및 평가위원 등도 반드시 검토·제안토록 하고,

- 환경 변화로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과제는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자 제재와 책임 없이 중도에 중단 허용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p>제36조(진도점검)</p> <p>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u>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u> 협약이 정한 <u>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u> <u>할 수 있다.</u></p>	<p>제36조(진도점검)</p> <p>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u>주관기관,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u> 등은 협약이 정한 <u>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u> <u>야 한다.</u></p>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p>제32조의5(특별평가) ①~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2조의5(특별평가) ①~③ (생략)</p> <p><u>④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별 표2](<u>2</u>-③)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생략)</p>	<p>[별 표2](<u>2</u>-③)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u>기술이나 시장 환경</u>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생략)</p>

## 4. 경쟁형 과제 활성화

- (혁신방안) 경쟁형 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과제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페널티 면제, 과제수행 총량제 적용 배제
- (현황) 경쟁형 과제에서 탈락한 연구자 및 기관\*은 '중단(성실)'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제재 조치 미 실시
  - \* 대부분 연구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
  - 다만, 경쟁 과정에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단(불성실)' 처리하고 제재 조치 처분이 가능
- (개정내용) 경쟁형 과제의 경우, 도전적 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 미달성에도 제재조치 미 실시하고, 총량제 적용 배제 근거 마련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5. (생략) <u>6.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된 과제</u>	

현행	개정(안)
<p>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p> <p>⑮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략)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p> <p><u>1의2. (신설)</u></p>	<p>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p> <p>⑮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략) <b>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b>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b></p> <p>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p> <p><u>1의2.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한 경우</u></p>

## 5. 조기완료 인센티브 도입

- (혁신방안)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면, 잔여기간 및 사업비를 후속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기완료 활성화
- (현황) 연차평가지 수행 과제를 '조기종료' 판정 가능
  - 조기종료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등으로 구분
  - \*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 달성 + 결과 우수
  - \*\*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 달성
  - \*\*\*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 달성 + 계속 수행 필요성 적은 경우
- (개정사항)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동안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 R&D 허용
  - \* 후속 R&D 예시 : TRL 7단계 과제 종료시, 8~9단계 연구

###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제37조(연차평가) ①~⑩ (생략) <u>&lt;신 설&gt;</u>	제37조(연차평가) ①~⑩ (생략) <u>⑪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종료” 판정을 하지 않고 평가 결과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수행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u>

## 6. R&D 결과 검증 강화

- (혁신방안) 최종평가지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 첨부 의무화하여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
  -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평가 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R&D 결과의 객관성 강화
    - \*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복수의 시험인증기관이 참여 또는 자문 수행
    - \* 전담기관 - 시험인증기관 MOU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참여 확대
- (현황)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외에 “수행기관 자체 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 가능
- (개정사항)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
  - \*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 신기술 분야 등
- 평가방법 개발,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p>제32조의6(최종평가)</p> <p>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경우에 <u>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32조의6(최종평가)</p> <p>②수행기관은 <u>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행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u></p>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 ○ 과제 수행과 관련된 <u>시험·분석·검사</u> , 임상시험 (후략)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 ○ 과제 수행과 관련된 <u>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u> , 임상시험 (후략)

## 7. 특허전략 내실화

- (혁신방안)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법인을 활용한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 최소 1.5천만원(2억 이하 과제 제외), 정부출연금 10억원/년 이상 과제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사용 의무화 (특허청 IP R&D 사업 기준)
- (현황) 특허컨설팅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계상기준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용 여부는 연구자 선택 사항
- (개정내용)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특허컨설팅 의무화하고, 계상 기준(사업공고에 반영)은 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u>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계상하여야 함</u>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u>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u>

## 8. 표준화 활동 강화

- (혁신방안) 표준연계 과제는 연구비에 **표준화 활동 사업비**(1억원 이내) 계상 의무화 및 **표준 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여
- (현황) 사업비 계상, 표준 전문가의 위원 참여는 **별도 규정 없음**
- (개정내용) 혁신방안에 따라 **표준화 활동 소요 예산**을 반드시 계상토록 하고, 평가위원회에 **표준전문가 참여 규정 신설**

###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p>[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p> <p>&lt;연구활동비&gt;</p> <p>○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p> <p><u>(신 설)</u></p>	<p>[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p> <p>&lt;연구활동비&gt;</p> <p>○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p> <p><u>-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u></p>

###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p><b>제6조(평가위원회 등)</b>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p> <p>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생략)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p> <p>가.~라.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b>제6조(평가위원회 등)</b>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p> <p>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생략)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p> <p>가.~라. (현행과 같음)</p> <p><u>마.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신규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u></p>

## 9. 기획과 규제개선 병행체계 구축

- (혁신방안)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의무화하고, 신규 과제는 검토가 병행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
  - \*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검토과정에서 제외
- (현황) 과제기획시 경제적 타당성에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규제에 의한 사업화 장애 요소 검토 사항은 없음
- (개정내용) 혁신방안에 따라 과제기획 시 규제개선 사항의 검토를 병행하고,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 여부 확인

###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b>제18조(과제기획)</b>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후략) 1. 기술적 타당성 : (생략)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b>제18조(과제기획)</b> ② (생략) 1. 기술적 타당성 : (생략)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u>규제개선 필요성</u> , 파급효과 등

###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b>제13조(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b>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중략)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	<b>제13조(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b>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중략)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u>규제개선 필요성</u> ,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

현행	개정(안)
<p>시한다.</p> <p>⑥ (생략)</p> <p>⑦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MD, PD 및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과제 기획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p>	<p>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p> <p>⑥ (생략)</p> <p>⑦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MD, PD 및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u>규제개선 검토 여부</u>,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p>

## 1. 시약·재료비 등 물품구매기준 마련

### 1. 추진배경

- 국조실\*에서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기준 마련 요청('17.3월)

\* 국조실 주관으로 7개 부처 34개 R&D 사업 표본점검 실시 ('16.10월 ~ '17.1월)

\*\*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도입시에 장비도입심의회 의 사전심의 실시

### 2. 개선방향 (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2 신설)

- (사전점검 체계) 기준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규·연차·단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연관성, 규모 적정성 사전 검토
  - 신규과제 신청시 단가, 수량,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주요사양, 사용용도 등을 적시한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참고2) 징구
- (기준금액) 사전점검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구매금액 상위 25%\*에 해당하는 2천만원(해당연도 기준)으로 설정
  - \* 최근 3년간 물품 구매내역을 분석한 바, 단위 품목 기준 구매금액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2천만원 규모
- (정산강화) 사업 정산시 누계 금액 500만원 이상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적정량 및 연구 합목적성 등 검증을 위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구매 물품 목록 제출(참고3)
  - \* 단순 거래 증빙 외에 재료 사용과 연구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
- (적용기관) 국조실에서 요청한 '민간 수행기관'의 범위는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영리기업'이 해당

현 행	개 정
<p>&lt;신설&gt;</p>	<p><u>제31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다음 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u></p> <p><u>②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연차·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u></p>

## 참고 2

## 시약 · 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참고 3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첨부 서식 추가

【서식 제12호】

수행기관 시약·재료 구매 내역서(부가세 포함 누계금액 500만원 이상)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총수행기간		당해수행기간	
총사업비		당해사업비	

시약·재료 구매 목록

(단위: 천원)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매사유
소계	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시 구매한 시약·재료비 집행내역(부가세 포함 누계금액 500만원 이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인)  
수행기관 책임자 : (인)

00000000 귀하

## 2. 전략기술의 보안과제 관리 강화

### 1. 개요

- (배경) '17년 5~8월, 무역안보과에서 국가 R&D 전략기술\* 관리실태 점검 실시('14~'16년 과기·산업부 과제 중 외국인 참여 360개 과제)
  - \* (전략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부고시) 해당 기술
  - 조사대상 중 5.8%(21건, 과기부 9, 산업부 12)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 이중 실제로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는 전무
  -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제(전략물자, 원자력플랜트)는 보안과제로 지정필요(보안관리요령 제10조)

### 2. 보안과제 지정 절차(보안관리요령 제10조)

- (보안등급) R&D 과제 보안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며, 보안과제 해당 여부는 5개 기준\*에 따라 결정
  - \* ①세계 초일류기술, ②국산화 추진 기술, ③산업기술보호법 관련, ④대외무역법 관련(전략물자, 원자력 플랜트), ⑤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 고려
- (결정절차) 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산업부에 보고·확정
  - 평가위원회 심의 후 보안등급 적정성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전문기관\*에 의견조회 후 보안등급 변경 가능(임의조항)
  - 한편, 국제협력사업 규정(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에는 해외기관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보안등급 분류 적용 예외 조항 운영

### 3. 개선방안(안)

- (의견조회 의무화) 해외기관 참여과제\*는 선정 평가 후 전담기관이 전문기관에 의견조회 의무화(보안관리요령 제10조 제5항 신설)



○ (예외조항 삭제) 국제협력사업 관련 규정의 '해외기관 참여과제  
보안등급 분류 예외' 조항 삭제(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호)

< 보안관리요령 개정(안) >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 ④ (생략)  ⑤ <신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 ④ (생략) * 1항: 과제신청기관에서 자체 보안등급 결정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한다.

<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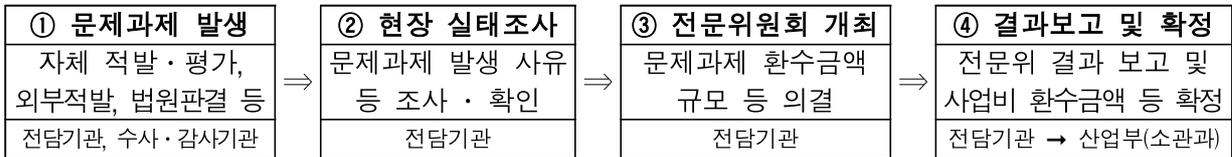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9. 신규평가 가) ~ 아) (생략) 사) 보안등급 분류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일반과제 또는 보안과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중략) 국방·안보 관련 기술 개발, (중략) 등의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아) 생략 자) 해외 기관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u>바)부터 사)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u> * 바) 과제 참여율 관련 조항 <u>차) 신설</u>	9. 신규평가 가) ~ 아) (현행과 같음) 사) (생략)  자) 해외 기관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u>바)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u> <u>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바) 및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3. 문제과제의 전문위 평가결과 보고시점 명문화

#### 1. 검토배경 및 현황

- (배경) '17년 국정 감사에서 R&D 문제 과제에 대한 환수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절차 개선 필요성 지적
- (현황)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7명 내외)
  - \*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과 법적조치 중단, 사업비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 등

#### 【문제과제 사업비 환수확정 절차】



- '16년 국감 지적으로 전문위원회 개최시기\* 단축('16.12월)

\* 사실을 인식한 시점으로 부터 6월 이내 → 4월 이내로 개정 완료

- 다만, 환수금 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하는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미비(국감 지적사항)

#### 2. 개선방안(안)

- 전문위원회의 환수결정 결과를 확정 이후 10일 이내에 산업부에 보고토록 명시적으로 설정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45조)

현 행	개정(안)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⑥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u>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u> 한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같음한다.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⑥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u>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u> 한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같음한다.

## 1. 신규인력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불인정 기준 개선

## 1. 검토배경

- 현행 규정상 R&D 수행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예외 조항\* 운영(사업비요령 별표2)
  - \* 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의 현금산정 가능
- 한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를 계획 대비 미집행 할 경우에 그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집행액 불인정(사업비요령 별표4)
  -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4(불인정기준 예시)  
[인건비] 1. 공통사항 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  
- 동 조항이 불합리하므로 개선 필요하다는 민원 제기(규제개혁신문고)

## 2. 문제점

- 사업비요령 별표4의 규정은 기존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계획대비)미집행만큼 불인정
- 즉, 미집행 금액에 맞춰 기존인력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더라도 불인정 금액은 불변하므로 사업비요령 별표2의 내용과 충돌\*
  - \* 사업비요령 별표 2는 신규채용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나, 별표 4 규정 적용하면 신규인력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할 경우에 기존인력 인건비 금액과 관계 없이 미집행 금액만큼 불인정

## &lt; 기존인력 미집행에 따른 기존인력 현금인건비 불인정 예시 &gt;

	구분	당초 계획	집행액	불인정액
사례1	신규인력	50백만원	49백만원	1백만원
	기존인력	50백만원	50백만원	
사례2	신규인력	50백만원	49백만원	1백만원
	기존인력	50백만원	49백만원	
사례3	신규인력	50백만원	49백만원	1백만원
	기존인력	50백만원	45백만원	

### 3. 개선방안(안)

○ 현행 사업비요령 별표2는 신규인력에 대한 실제 인건비 집행액 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집행액을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 사업비요령 별표 4를 별표 2의 취지에 맞게 개정

⇒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집행할 경우 기존 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 사업비요령 별표4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별표 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 자. (생략) <u>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u>	[별표 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 자. (생략) <u>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u>

#### < 규정 개정시 불인정금액 예시 >

구분	당초 계획	집행액	불인정액
사례1	신규인력	50백만원	1백만원
	기존인력	50백만원	
사례2	신규인력	50백만원	없음
	기존인력	50백만원	
사례3	신규인력	50백만원	없음
	기존인력	50백만원	

## 2.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시 인건비 지급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R&D 과제 참여 연구원은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지급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 미지급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임에도, 대학 산단 과제 수행하는 계약직 연구원(교수와 근로계약)은 출산 휴가시 인건비 미지급(민원사례)
- (문제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인건비 지급 관련 해석상 논란\* 여지가 있으며,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R&D(IITP)에서는 인건비 지급 인정
  - \* 1)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 2) 출산 휴가는 휴직과는 달리 휴가에 속함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견해

### 2. 개선방안(안)

- (필요성)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등 정부정책 기조와 인건비 지급 대상임을 인정하는 타 부처 사례 등을 고려 → 인건비 지급 인정
- (개정내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계상 기준에 명시(사업비요령 별표 2)

#### <사업비 요령 별표 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인건비 계상/산정 기준]

-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1. 연구발표회 운영방식 규정 반영 및 서식 통일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산업기술 R&D 제도개선방안'('16.12월) 실시에 따라, 일괄·단계협약 과제는 매년 의무적으로 연구발표회\* 개최
  - \* 연구개발수행실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가능(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36조 제4항)
- (문제점) 최근 회계연도 일치(순기조정)에 따라 1차년도 진행율이 높지 않는 과제(6개월 이하)도 연구발표회 개최
  - 또한,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의 특별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특별평가 사유를 확대할 필요
  - 연차협약 과제는 협약시마다 의무사항불이행과 사전지원제외 조건을 검토후 출연금 지급하나, 단계/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출연금 지급시 검토사항이 불명확
  - 한편, 통일된 보고 양식이 없어 연구수행자, 전담기관 애로

### 2. 개선방안(안)

- (연구발표회 대체) 해당년도 수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는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또는 서면검토로 대체 가능
- (특별평가 사유 현실화) 현행 특별평가 사유 외\*에도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검토·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포괄 규정
  - \* 계속수행 필요성이 적은 경우, 목표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출연금 지급) 단계/일괄협약 과제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각 수행기간의 개시 시점에 의무사항불이행 및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출연금 지급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서식 통일) 연구발표회용 보고서 및 검토 양식을 통일을 위해 표준서식에 관련 서식\* 신설

\* 진도실적보고서, 검토의견서, 종합의견서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p>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p> <p>④ (신설)</p>	<p>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u>일괄 또는 단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간 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과제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각 수행기간의 개시 시점에 수행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u></p> <p>④<u>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을 교체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연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주관기관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2개월 내에</u></p>

현 행	개 정
⑤ (신 설)	<p>주관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과제 중단을 결정한다.</p>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 행	개 정
<p><b>제36조(진도점검) ① (생 략)</b>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u>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또는 연구발표회</u>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u>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u>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 ⑥ (생 략)</p> <p>⑦ 일괄 또는 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한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u>다만, 연차별 협약</u></p>	<p><b>제36조(진도점검) ① (생 략)</b>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u>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u>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u>위원회를 통한 검토·판단이 필요한 때에는</u>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일괄 또는 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한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u>다만, 해당연도 수행기간</u></p>

현 행	개 정
<p>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이 6개월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⑧전담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장관에게 확정을 요청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대상이 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지 아니한다.</p> <p>⑨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발표회 결과를 확정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p> <p>⑩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 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시 지적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 I. 해당 연도 추진 실적

### □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달성도

- ※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 ※ 개발 목표 달성 정도 및 달성과정을 제시

### □ 기술개발 수행 중 실패사례

### □ 장애요인 극복과정

- ※ 기술개발 수행 중 실패사례, 장애요인 극복과정을 기재(기술개발 컨설팅을 위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

## II. 기술개발결과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 하는 비중 (%)	세계최고 수준 보유 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 준	목표		실적	달성률 (%)	기준 설정 근거	평가 방법
			성능수준	성능수준	최종목표	당해연도				
1.										
2.										
3.										
4.										
5.										
6.										
7.										
8.										
9.										

※ 기술개발 결과물(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기술문서 등)에 대해 기재

- 논문의 경우 “국내 및 국외 발표” 자료로 분류해서 상세히 작성
- 특허의 경우 “특허 전략 수립 및 시행여부”, “국내 출원 및 등록”, “국외 출원 및

등록”으로 분류해서 상세히 작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 제시
- 기술 수준, 성능, 품질은 관련 입증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등 첨부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은 관련 기밀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 또는 제작 도면 등도 첨부

※ 고용 창출 효과 기재(신규 고용 실적 등)

※ 개발 후 마케팅 방안 제시

### Ⅲ. 결론 및 차년도 계획

#### □ 기술개발 수행에 대한 결론

※ 기술개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제시(연구결과의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기술이전 및 매출발생 실적 등 수행결과의 파급효과 작성)

#### □ 차년도 계획

※ 차년도 기술개발 내용을 간략히 제시

####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차년도 수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기재

#### IV. 변경 요청 사항

##### IV-1. 개발목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 하는 비중 <sup>2)</sup> (%)	세계최고 수준 보유 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 준	변경전				변경후			변경 요청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최종 목표	2차	3차	...	2차	3차	...		
1.													
2.													
3.													
4.													
5.													
6.													
7.													

※ 당초 목표와 동일할 경우에도 변경목표에 동일하게 기재

(목표변경이 없는 경우) 제시한 기술개발 목표 수준 검토 결과 제시

\*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현 기술개발 목표의 도전성과 창의성 수준 작성

(목표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차년도 목표에 대해서 내용, 사유 및 근거\* 제시

\*변경 요청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IV-2. 기타 (※ 차년도 사업비 등 추가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서 기재)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 例示) : 필요시 세부 자료는 별첨으로 작성

(예시)

(단위 : 천원)

세목	변경전	변경후	주요변경 내용
인건비	300,000	250,000	· 신규인력 퇴사(△50백만원)
학생인건비	0	0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320,000	380,000	· 차년도 ○○○장비 추가(+60백만원) * 사유 : · AA장비 → BB 장비 변경 * 사유 :
연구활동비	25,000	20,000	· 장비 및 재료비 증가에 따른 감액
연구과제추진비	15,000	15,000	·
연구수당	30,000	25,000	· 인건비 변경에 따른 감액
간접비	60,000	60,000	·
소계	750,000	750,000	

**[별첨1] 기술개발 추진 일정**

**I-1 기술개발 추진 일정**

일련 번호	개발 내용	추진 일정 (개월)												달성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100%
2	설계도면 작성			.....	.....	.....	.....	.....	.....	.....				100%

※ 개발내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 당초계획

— . — . — 개발내용

## [별첨2]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 기업명 : ○○○○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		
	20 년	20 년	20 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채납처분 여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		
채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		
기타 특이사항	○		

-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
- ※ 증빙 서류 제출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 [별첨3]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기관명 : ○○○○ >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 X( )	
	○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O( ), X( )	
	○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O( ), X( )	
	○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O( ), X( )	
참여연구원 관리	○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을 받았다	O( ), X( )	
	○ 참여연구원에게 보안관리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고 있다	O( ),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O( ), X( )	
	○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O( ), X( )	
	○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O( ), X( )	
연구시설 관리	○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	O( ), X( )	
	○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O( ), X( )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O( ), X( )	
정보통신망 관리	○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O( ), X( )	
	○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O( ), X( )	
	○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O( ), X( )	
	○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O( ), X( )	
	○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O( ), X( )	
	○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O( ), X( )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에 대해 각각 작성

**[별첨4] 자체 청렴교육 현황**

- 일시 및 장소 :
- 교육자 :
- 교육내용 :
- 참석자 :
- 사진 :

--

\* 수행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나, 총괄책임자가 전체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도 가능

**[별첨5] 평가항목별 시험성적서**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시험성적서 스캔파일 첨부	시험성적서 스캔파일 첨부

## 참고 2

## 연구발표회 신규 서식 (검토의견서)

[평가 서식 제2-1-2호] 연구발표회 검토의견서

### 연구발표회 검토의견서

사업명			
과제번호		발표일	20 . . .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검토결과	계속 / 평가대상		
검토의견	<p>1. 정량적 목표, 항목 및 이에 대한 평가방법* 적정성</p> <p>* ①공인시험성적서 ②수요기업평가 ③공인시험기관 자문참관 ④공인시험기관 평가방법 개발참여</p> <p>2. 목표변경 유지·변경 필요성</p> <p>3. 특허, 사업화, 규제 등에 대한 컨설팅</p> <p>4. 차기 연구 방향</p>		
작성자	검토위원 : (인)		

## 연구발표회 종합의견서

사 업 명			
과제번호		발표일	20 .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검토결과	계속 / 평가대상		
종합검토의견	<p>1. 정량적 목표, 항목 및 이에 대한 평가방법* 적정성</p> <p style="margin-left: 20px;">* ①공인시험성적서 ②수요기업평가 ③공인시험기관 자문참관 ④공인시험기관 평가방법 개발참여</p> <p>2. 목표변경 유지·변경 필요성</p> <p>3. 특허, 사업화, 규제 등에 대한 컨설팅</p> <p>4. 차기 연구 방향</p>		
작성자	책임평가위원 : (인)		

**[별첨1] 연구발표회 검토지표**

**연구발표회 검토지표**

검토 항목	세부 항목	검토 지표
해당년도 목표달성	개발 목표의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정량적 달성도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 - 과제 시작 후 과제 내용으로 국내·외에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질적 수준 - 관련인증·규격 획득여부 및 가능성
	개발 방법의 적절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난점과 장애 요소의 극복 및 추진 과정의 적절성 - 특허 전략수립 및 시행 여부
	수행결과의 파급효과	- 연구결과의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 기술이전 및 매출 발생 실적
차년도 계획	개발 목표의 도전성과 창의성	-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유지 여부
	개발내용 및 연구비 적정성	- 차년도 기술개발 내용의 적절성 -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화 및 경제성	-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인증규격 연계, 표준화연계, 시장분석 및 수요기업 연계 등) -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2. 문구조정 등 기타 사항

○ 연차협약에서 일괄협약으로의 변경에 따라 규정\*상 필요한 문구 조정

\* 공통운영요령, 사업비요령,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u>해당연도 협약시에</u>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u>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u>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부처명 변경에 따른 규정\*상 문구 조정

\* 공통운영요령, 사업비요령,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6조(간접비 산정) ②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u>미래창조과학부장관</u> 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②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업무절차 변경\* 사항을 평가관리지침에 반영

\* (기존) 기술성평가→민간투자심사, (변경) 개념평가→민간투자심사→기술성평가

### <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3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전담기관의 장은 <u>신규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u> 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전담기관의 장은 <u>개념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 과제”</u> 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연구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규정상\* 문구 명확·일치화 또는 위치 조정 등

\* 공통운영요령, 사업비요령,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u>중소기업</u> <u>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u>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u>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u>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안)(부칙에서 본문으로 위치 조정) >

현행	개정(안)
제28조(협약의 준비)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u>“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u> 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준비)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u>다음 각 호의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u> 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u>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u> <u>나. 대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u>

- 전담기관은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나, 주관기관의 휴·폐업 등 제출면제 사유 명확화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p><b>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b></p> <p>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u>미래창조과학부</u>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 3, 제32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p>	<p><b>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b></p> <p>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 3, 제32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u>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u>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p>

- 기타 표준서식 수정: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상에 과제정보에 이용에 대한 부분 추가\*, 기존 성과활용보고서 양식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보고서 양식으로 현행화 등

\*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의 과제정보를 국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근거를 협약서 조항에 이미 신설(‘17.9.15)하였으나, 연구원 개인별 동의를 확실하게 받기위해 서식에 반영